

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69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3. 7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 및 자문수당 현실화를 통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기피 현상 개선
- 나.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개 모집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 및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
- 다. 직원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에 대한 변호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전성 보장

2. 주요내용

- 가.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(안 제2조제1항)
- 나.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규정(안 제2조제2항)
- 다. 자문수당(고문료) 상향(안 제6조제1항)
- 라. 중요 법률자문 액수 상향(안 제6조제3항)
- 마. 직원등의 변호비용 지원(안 제12조)
- 바. 착수금 지급 기준 상한 변경(5억→7억)(안 별표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3. 6. 6. ~ 2022. 6. 25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
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그 밖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개업 중인 변호사(법무법인을 포함한다) 중에서 10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.

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징계 등의 전력(前歷)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조(해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

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
2.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
4. 소송수행 중 다음의 사유로 하남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 - 가.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
 - 나.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
 - 다.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
 - 라.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
5. 고문변호사가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(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) 또는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징계처분(견책을 제외한다)을 받은 경우
6.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의 자문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수행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즉시 소송 서류 일체를 시에 인계하여야 하고, 시장은 지급된 착수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4조(고문변호사의 업무)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

2. 행정심판(조세심판을 포함한다) 및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
3. 공무원 등 내부 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·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
4. 자치법규 등 법령의 해석 및 질의 등에 관한 검토
5.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적 검토 및 자문
6. 「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무료법률상담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5조(이해충돌 방지)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·민사·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.

② 시에서 근무했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(퇴직 변호사 또는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)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.

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
1.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, 협회 등의 고문,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
2.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 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.

제6조(자문수당 등)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,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 활동의 공로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고, 지급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.

③ 시장은 시의 행정·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또는 그 밖의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추정가액(분쟁, 위험 등이 현실화 되었을 때 추정되는 가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: 300만원이내
2. 추정가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: 400만원이내
3. 추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: 500만원이내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.

제7조(소송비용 등) ① 시장은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과 별표 2의 일람표를 참고하여 각 심급

(審級)단위별로 지급하되, 소송목적의 값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병합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착수금을 지급한다.

②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(본안사건에 한정한다)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제1항의 각 지급 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,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제 11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

2.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

제8조(소송대리인의 선임)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임기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

여는 사건의 최종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송 비용 등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다.

제9조(행정심판 등의 비용) 시장은 행정심판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고문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여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행정심판 재결 등 결정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된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0조(소송심의위원회)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
2.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
3.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
4. 제1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
5.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
6. 「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하남시

조례·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.

제11조(중요소송의 지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
2.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
3.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
4. 패소 시 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
5.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

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에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변호비용등의 지원)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(이하 “직원등”이라 한다)이 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·피고인, 민사사건의 피고(이하 “피고등”이라 한다)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(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업무분장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 집행

2.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

3.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·폭행, 성희롱·성추행·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: 다음 각 목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, 고소장 작성,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가. 개인단독사건: 400만원 이내

나. 다수관련사건,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: 700만원 이내

2.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: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,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,000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까지 지원

3. 공무와 관련하여 민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: 시장이 결정하되,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,000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까지 지원

③ 시장은 변호비용등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

직무 집행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⑤ 시정과 관련하여 직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소송수행 공무원의 책무 등) ① 소송수행 공무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시 본청의 송무를 담당하는 부서(이하 “법무총괄부서”라 한다)의 장의 지시 및 방침에 따라야 한다.

②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.

③ 소송수행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법무총괄부서 장의 지시나 방침과 다르게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, 법적 근거 및 증거서류 등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부서명 | | 법무감사관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부서장 직위 · 성명 | 법무감사관 김 승 한 |
| | 팀장 직위 · 성명 | 법무팀장 최 설 미 |
| | 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 | 노 성 주 (790-5615) |

■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[별표 1]

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(제7조제1항, 제3항 관련)

1. 착수금

| 구분 | 지급기준 | | 소송비용청구서의 구비서류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| 사건별 | 착수금 | | |
| 민사소송 | 가. 가압류, 가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. 다만,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,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.(1)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급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구서 |
| | 나. 본안사건 | (1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만원 이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구서 ○ 소가증명원 |
| | | (2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(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별표 2]에서 정하는 금액 | |
| 다. 환송심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| | |
| 행정소송 | 가. 집행정지 등 각종 신청사건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사소송에 준한다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구서 ○ 소가증명원 |
| | 나. 본안사건 | (1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50만원 이내 (다만, 토지수용재결사건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) | |
| | | (2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(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사소송에 준한다. | |
| 다. 환송심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사소송에 준한다. | | |
| 공통 | 가. 가집행정지신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구서 |
| | 나. 강제집행신청(각 신청별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구서 |
| 기타 | 가. 헌법재판소 관할, 대법원 전속관할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00만원 이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구서 |
| | 나.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0만원 이내 | |

※ 위 각 신청 사건의 경우 대리인이 변론 등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 회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.

2. 승소사례금

|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|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|
|--|--|
| <p>가.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,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나.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·인낙(화해권고결정, 조정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. 다만,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다. 중재사건은 경제적 이익이 중재 목적 가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마.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다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청구서 ◦ 사건확정증명원 또는 소취하증명원 중 해당서류 ◦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|

3. 기타비용

| 지 급 기 준 | 구 비 서 류 |
|--|---|
| <p>가. 인지대 : 실제로 소요된 금액</p> <p>나. 송달료 : 실제로 소요된 금액</p> <p>다. 검증비 : 실제로 소요된 금액</p> <p>라. 감정료 : 실제로 소요된 금액</p> <p>마. 교통비 : 실제로 소요된 금액</p> <p>바. 등사비 : 실제로 소요된 금액</p> <p>사. 증인여비 : 실제로 소요된 금액</p> <p>아. 출장여비 : 필요한 경우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별표1의 제1호 준용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구서 ○ 인지·송달료의 납입영수증 ○ 해당비용의 납부명령서 또는 납입영수증 중 해당서류 |

■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[별표 2]

수입변호사의 착수금 지급 일람표(제7조제1항 관련)

| 소송물가액 | 지급액 | 소송물가액 | 지급액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5,000만원미만 | 2,000,000원 | 7,900만원이상 | 2,340,000원 |
| 5,000만원이상 | 2,050,000원 | 8,000만원이상 | 2,350,000원 |
| 5,100만원이상 | 2,060,000원 | 8,100만원이상 | 2,360,000원 |
| 5,200만원이상 | 2,070,000원 | 8,200만원이상 | 2,370,000원 |
| 5,300만원이상 | 2,080,000원 | 8,300만원이상 | 2,280,000원 |
| 5,400만원이상 | 2,090,000원 | 8,400만원이상 | 2,390,000원 |
| 5,500만원이상 | 2,100,000원 | 8,500만원이상 | 2,400,000원 |
| 5,600만원이상 | 2,110,000원 | 8,600만원이상 | 2,410,000원 |
| 5,700만원이상 | 2,120,000원 | 8,700만원이상 | 2,420,000원 |
| 5,800만원이상 | 2,130,000원 | 8,800만원이상 | 2,430,000원 |
| 5,900만원이상 | 2,140,000원 | 8,900만원이상 | 2,440,000원 |
| 6,000만원이상 | 2,150,000원 | 9,000만원이상 | 2,450,000원 |
| 6,100만원이상 | 2,160,000원 | 9,100만원이상 | 2,460,000원 |
| 6,200만원이상 | 2,170,000원 | 9,200만원이상 | 2,470,000원 |
| 6,300만원이상 | 2,180,000원 | 9,300만원이상 | 2,480,000원 |
| 6,400만원이상 | 2,190,000원 | 9,400만원이상 | 2,490,000원 |
| 6,500만원이상 | 2,200,000원 | 9,500만원이상 | 2,500,000원 |
| 6,600만원이상 | 2,210,000원 | 9,600만원이상 | 2,510,000원 |
| 6,700만원이상 | 2,220,000원 | 9,700만원이상 | 2,520,000원 |
| 6,800만원이상 | 2,230,000원 | 9,800만원이상 | 2,530,000원 |
| 6,900만원이상 | 2,240,000원 | 9,900만원이상 | 2,540,000원 |
| 7,000만원이상 | 2,250,000원 | 1억원이상 | 2,550,000원 |
| 7,100만원이상 | 2,260,000원 | 1억5천만원이상 | 2,800,000원 |
| 7,200만원이상 | 2,270,000원 | 2억원이상 | 3,050,000원 |
| 7,300만원이상 | 2,280,000원 | 2억5천만원이상 | 3,300,000원 |
| 7,400만원이상 | 2,290,000원 | 3억원이상 | 3,550,000원 |
| 7,500만원이상 | 2,300,000원 | 4억원이상 | 4,050,000원 |
| 7,600만원이상 | 2,310,000원 | 5억원이상 | 4,550,000원 |
| 7,700만원이상 | 2,320,000원 | 6억원이상 | 5,050,000원 |
| 7,800만원이상 | 2,330,000원 | 7억원이상 | 5,550,000원 |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

-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제6조제1항 및 제3조, 제7조제1항 및 제3조, 제12조 제2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
 - 제6조제1항 고문변호사 고문료의 증가
 - 제6조제3항 중요법률자문수수료 신설
-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등
 - 제7조제1항 및 제3항 고문변호사 보수 상한액의 증가
- 직원등의 변호비용등의 지원
 - 제12조 제2항 직원등의 변호비용 지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.
- 2023년 본예산 기준 변호사 보수 및 직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에 조례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증가하는 소요예산을 더하여 추계함.

나.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자문수당

-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문료와 법률자문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자문수당으로 구분함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문변호사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,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문료를 2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상향하고자 함
- 중요자문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출함
 - 안산시: 2021년(300만원), 2023년(500만원) 각 1건씩 중요자문으로 지정하여 비용 지급

- 산출내역 1. 고문변호사 고문료
 - 기존 : 200,000원× 8명×12개월 =19,200,000원
 - 변경 : 500,000원×10명×12개월 =60,000,000원(40,800,000원 증가)
 - ▶ **년간 40,800,000원 증가**

- 산출내역 2. 중요법률자문
 - 1(년간 중요자문 의뢰 건수)×3,000,000원=3,000,000원
 - ▶ **년간 3,000,000원 증가**

※ 현재 하남시의 1건당 자문료는 6~9만원 수준이고, 조례 개정시 1건당 자문료는 12.5만원~16만원 수준임(추후 규칙 개정 가능)

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4조(자문수당의 지급)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월중의 자문실적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월 500,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. <개정 2009.3.19., 2019.4.5, 2020.5.8.>

1.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1건당 100,000원 <개정 2019.4.5.>

| | 조례 개정 전 | 조례 개정 후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월 지급 고문료 | 월 20만원 | 월 50만원 |
| 실제 지급 자문료 | 3건 자문시 건당 6.6만원 ¹⁾ | 3건 자문시 건당 16만원 ³⁾ |
| | 4건 자문시 건당 7.5만원 ²⁾ | 4건 자문시 건당 15만원 ⁴⁾ |
| | 5건 자문시 건당 8만원 | 5건 자문시 건당 14만원 |
| | 6건 자문시 건당 8.3만원 | 6건 자문시 건당 13.3만원 |
| | 7건 자문시 건당 8.5만원 | 7건 자문시 건당 12.8만원 |
| | 8건 자문시 건당 8.75만원 | 8건 자문시 건당 12.5만원 |

다.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등

- 고문변호사 착수금 지급 일람표(조례 별표2.)에 소송물가액 기준을 ‘5억원 이상’ 에서 ‘7억원 이상’ 으로 상향하여 착수금 지급 한도를 상향

1) 20만원/3건=6.6만원
 2) 30만원/4건=7.5만원
 3) 50만원/3건=16만원
 4) 60만원/4건=15만원

□ 조례 개정안

| 기 존 | | 변 경 |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소송물가액 | 지급액 | 소송물가액 | 지급액 |
| ... | ... | ... | ... |
| 5억원 이상 | 4,550,000원 | 5억원 이상 | 4,550,000원 |
| | | 6억원 이상 | 5,050,000원 |
| | | 7억원 이상 | 5,550,000원 |

□ 5년간 소송물가액 6억원 이상 사건의 착수금 지급 건수

| 평 균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3.6건 | 5건 | 1건 | 7건 | 4건 | 2건 |

○ 산출내역

- 3.6(소송물가액 6억 이상 사건 평균 건수)×1,000,000(추가 지급 상한액)=3,600,000

▶ 연간 3,600,000원 증가

라. 직원등의 변호비용 등의 지원

□ 기존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변호비용 등을 직원등(공무직, 단기근로자 등 포함) 피소 뿐만 아니라 제소 단계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

□ 기존에 공무원에게 지급한 변호비용 지원 사례는 2건이 있었으며 금액은 2020년 6,000천원과 2022년 5,005천원이었음

□ 현재 구체적인 추정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연간 5,000천원으로 산정함

▶ 연간 5,000,000원 증가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| | 1차연도 (2023년) | 2차연도 (2024년) | 3차연도 (2025년) | 4차연도 (2026년) | 5차연도 (2027년)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| | 0 | 0 | 0 | 0 | 0 | 0 |
| 해당없음 | | 0 | 0 | 0 | 0 | 0 | 0 |
| 세 출 | | 77,5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597,200 |
| 법무행정/소송수행 201 일반운영비 | | 77,5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597,200 |
| 재원 조달 | | 77,5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597,200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0 | 0 | 0 | 0 | 0 | 0 |
| | 보조금 | 0 | 0 | 0 | 0 | 0 | 0 |
| | 지방교부세 | 0 | 0 | 0 | 0 | 0 | 0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77,5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597,200 |
| | 지방세 | 77,5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129,920 | 597,200 |
| | 세외수입 | 0 | 0 | 0 | 0 | 0 | 0 |
| 지방채 |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기 금 |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공기업 특별회계 |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 | | 0 | 0 | 0 | 0 | 0 | 0 |